

[별표 14] <개정 2010.3.29>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 1 항관련)

측 정 조 건	상 해 기 준
<p>1.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p>	<p>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인체모형 머리의 상해기준값이 1,000이하일 것</p> $\left[\frac{1}{t_2 - t_1} \int_{t_1}^{t_2} a dt \right]^{2.5} (t_2 - t_1)$ <p>a :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₁, t₂ : 충돌중 36/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p> <p>나. 흉부의 가속도가 3/1,000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다. 대퇴부의 압축하중이 1,02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라. 인체모형의 어느 부분도 차실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p> <p>마. 인체모형 III를 사용할 경우 흉골의 압축 변위량이 76.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2.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에서 동적 전복시킬 때에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 중 낮은 쪽에 위치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p>	<p>인체모형의 어느 부분도 차실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p>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인체모형II 또는 인체모형III로서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인체모형 중에서 제작자가 선택한다.
2. "인체모형II"라 함은 자동차안전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인체모형III"라 함은 인체모형II를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량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운전자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3점식 안전띠를 부착한 자동차중 컨버터블 자동차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천정구조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제 2 호의 동적 전복시험의 상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